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에 관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9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1.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주민 동의요건 미충족 사례	8
2. 개별지원사업 비중 상한 입법례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1.
3.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

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u>주민 전체가 합의한</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 ----- -----주민의 <u>4분의 3 이상이 동의</u> -----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u>지원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u>지원방법과 제2항에 따른 주민의 범위 및 동의 절차</u> ----- ----- -----.

현행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

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¹⁾으로 구분됨.

그리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되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일부를 부담²⁾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해야 하고, 사업 대상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성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이는 현금성 지원³⁾인 주민지원사업 외에 마을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임.

그런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주민지원사업 확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전체 주민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다수 주민이 원하는 주민지원사업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례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전체 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 요건 충족이 보다 용이해져서 지원사업 추진도 상대적으로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목적⁵⁾은 ① 전력 수급의 안정 및 ② 국민경제·지역사회 발전에

3) 주민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전기요금의 보조,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으로 개별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성격이 강함.

4) 일부 주민의 반대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자료 1] 참조

5) 제1조(목적)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 기여이므로 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용창고 태양광 설치 수익사업, 지역인재 장학기금 지원 등과 같은 공동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로 보임.

그런데 현행 법률에 따라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주민 지원사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전환하는 마을이 '24년 기준 전체 대상 마을의 31%에 달하고 있고, 전환 마을의 약 94%가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100%로 정한 것을 볼 때, 동의요건이 완화되면 상당수 마을에서 공동지원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⁶⁾이 있음.

참고로, 해당 법률의 주민지원사업은 개별지원이라는 점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기요금보조사업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유사한데 각각의 사업이 개별지원 비중의 상한을 규정⁷⁾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나 개정안에 따라 공동지원사업의 축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

6) 추가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은 송·변전설비 종류 및 규정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데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동지원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면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 비중 상한은 지원사업비의 40%이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사업 비중 상한은 20%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에 공동 지원사업비 지급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1]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주민 동의요건 미충족 사례

구분	본부명	지역	마을(단지) 규모	반대 비율	미동의 인원
1	충북본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11리	2,408	0.10%	2
2	경기본부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296	0.60%	2
3	경기본부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1통	103	1.00%	1
4	광주전남본부	광양시 광영동 8통	385	1.00%	4
5	대전세종충남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27	1.00%	1
6	경기본부	화성시 동탄5동 영천27통	563	2.00%	11
7	전북본부	전북 정읍시 용두리	28	3.00%	1
8	충북본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30	3.33%	1
9	충북본부	원주시 귀래면 용암1리	63	4.80%	3
10	충북본부	충주시 양성면 마장리	22	4.80%	1
11	경기북부본부	서울시 은평구 신사7통	101	5.00%	5
12	대전세종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96	5.00%	5
13	충북본부	옥천군 군서면 증산리	59	5.09%	3
14	경기북부본부	서울시 은평구 신사10통	117	6.00%	7
15	경기북부본부	서울시 은평구 신사6통	129	8.00%	10
16	경남본부	경남 산청군 방목리	24	8.30%	2
17	경기북부본부	경기 양주소 효촌2리	99	10.00%	10
18	경남본부	경남 밀양시 사연리	11	13.00%	1

19	부산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범서읍 굴화 3리	497	15.00%	75
20	경기본부	용인시 처인구 양지4리	126	16.00%	20
21	경기북부분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24통	209	17.00%	36
22	경기본부	화성시 동탄5동 영천24통	611	20.00%	122
23	경기본부	용인시 처인구 양지12리	181	20.00%	36
24	경기북부분부	경기 가평군 방일3리	55	20.00%	11
25	경남본부	경남 밀양시 아불리	19	20.00%	4
26	경남본부	경남 김해시 팔판리	17	21.00%	4
27	경남본부	경남 하동군 반석리	6	24.00%	1
28	경남본부	경남 밀양시 여수리	29	26.00%	8
29	경남본부	경남 밀양시 범도리	12	27.00%	3
30	부산울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22통	375	30.00%	113
31	경남본부	경남 밀양시 바드리	13	31.00%	4
32	경남본부	경남 김해시 효동리	3	33.00%	1
33	경남본부	경남 의령군 신포리	3	33.00%	1
34	부산울산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25통	451	40.00%	180

자료: 한국전력공사

[참고자료 2] 개별지원사업 비중 상한 규정 입법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전기요금보조사업) ②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40(이 항에서 ‘지원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중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전기요금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